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14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임호선 · 이정문 · 장종태
윤준병 · 송재봉 · 김승원
권향엽 · 강경숙 · 이연희
이광희 · 복기왕 · 이강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 · 세종 ·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 · 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교통 정책 역시 실제 교통생활권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도시권을 특별시 · 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대도시권 중 최근에 추가된 전주권을 제외하고 광역교통망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권역 구조로 인식 · 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권역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교통축과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는 법적 구조를 개선

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권 내부의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도시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 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u>	나. 「지방자치법」-----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